



6월 19일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결기대회' 모습

7월 25일부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못 준다

한돈업계 “반쪽대책”...음식물류폐기물 전면 사용금지만이 정답

7월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전면 금지는 아니고 정부가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에 한한다. 그러나 한돈업계는 ‘반쪽대책’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면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금지가 아니라면 ASF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7월 1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을 전제로 남은 음식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들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농가에서는 남은 음식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승인된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만 급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은음식물 개별농가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급여는 계속 허용

언뜻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전면 금지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최종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 허용한 것이다. 당초 입법취지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고온소각로나 기계적 처분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업체가 받는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음식을 비롯해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재래시설 처리 급여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남은음식물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여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조치가 ASF로부터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한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돈업계 “ASF 예방 위해선 음식물류폐기물 전면 사용금지만이 정답”

이 같은 예외 규정에 한돈업계에서는 ‘반쪽’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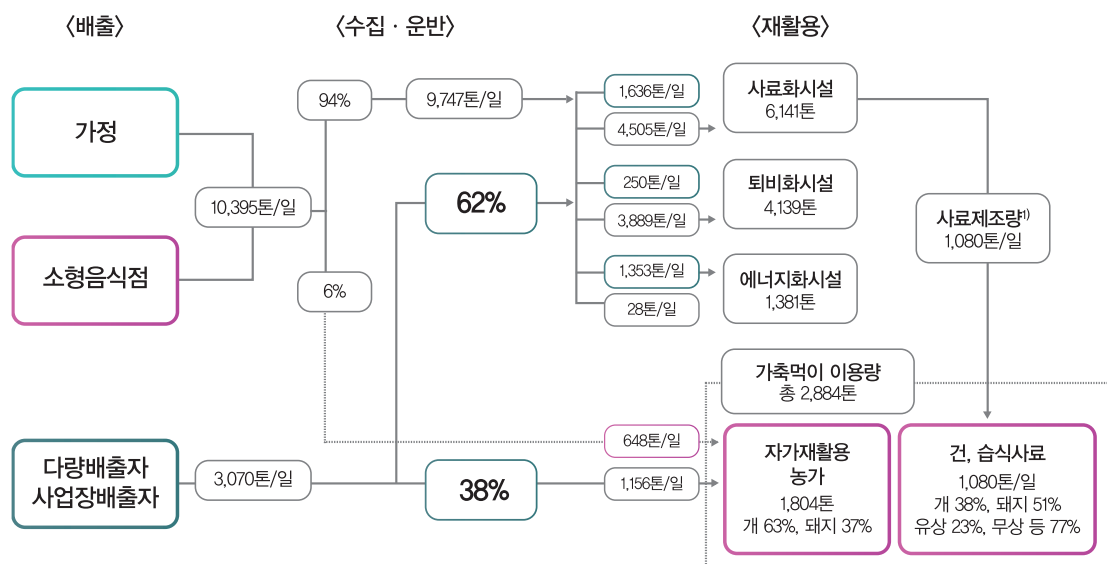
대한한돈협회 등 한돈업계가 주장해온 ‘전면금지’라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전면금지가 아닌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예방을 위해서는 돼지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 6,400여호 돼지농장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쓰는 농가는 257호(2019년 7월 기준)다. 이들이 사육하는 돼지 두수는 11만6,000두로 전체 사육 돼지 수의 1%다. 이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사육되는 돼지 수는 5만1,601두다. 총 돼지 사육두수의 0.43%다.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전국 5만두 이상 돼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먹는다는 뜻이 된다. 한돈업계에서 주장하는 ‘반쪽’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한돈업계는 소수의 돼지가 음식물류폐기물 사료를 먹지만, 사육 농가와 처리업체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음식물이 대부분 젖은 상태로 운반돼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가 비교적 쉽다. 수거 차량과 농가 공급차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교차 오염 가능성도 높다. 실제 음식물류폐기물 사료공장 82개소 중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 수는 41개다. 이중 9곳이 돼지사육업을 겸하고 있다.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주된 규제 대상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그냥 먹이는 소규모 농가라는 입장이다.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을 끓이는 등의 합법처리업체는 위생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시설설치신고서나 승인서를 받은 농가나 업체는 품질관리를 이미 철저히 받고 있고 종합처리업체와 거의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한돈업계는 그간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급여에 대해 ASF 예방 뿐만 아니라 돈가 및 한돈 이미지 하락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주장해 왔다. 지난 6월 19일에는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